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12.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금세탁 방지업무 운영 강화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원·자금의 원천 등의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고,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데, 아래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확인(CDD/EDD) 업무 절차 미흡

은행은 고객의 국적, 업종, 가입상품 등에 따른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한 고객을 '고위험 고객'으로 조기에 탐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 예) 신설 업체가 자본금이나 매출액 대비 거액의 자금을 해외송금하는 경우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이상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별로 고객확인 수행 기준 및 대상 거래를 점검하는 업무 절차가 부재함

㈏ 의심거래보고(STR) 업무 절차 미흡

은행은 이상 해외송금의 의심거래 추출 룰 등에 따른 경보 발생 시 고객의 사업내용, 평소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영업점에서 관련 의심거래를 증빙서류의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조사하거나, 영업점의 반복적 경보 종료에도 본부부서가 제한하거나 추가 점검하지 않는 등 STR 모니터링 업무가 미흡함